
2019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 목 차 ||

I. 감사 목적	1
II. 감사 개요	1
III. 감사 결과	3
< 총 평 >	3
1. 정책업무 분야	4
가. 부패방지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4
나. 부패신고 활성화사업	10
다. 공익신고 접수 및 통계관리	12
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사건 처리	15
마.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운영	17
2. 계약업무 분야	22
가. 인쇄비 집행 관련 부실견적서 징구	22
3. 예산·회계 분야	24
가.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24
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26
다. 관서운영경비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미흡	28

IV. 우수 사례	30
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30
2. 공공부문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32
3. 청탁금지법 취약 분야 발굴 및 관행 개선	34
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36
5. 지방 체육단체 지원·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37
6. 연예인 신분공개경위확인 사건 직권조사	39
7. 지방의원 청렴연수과정 운영	41
V. 향후 조치계획	43

I

감사 목적

- 2년 단위의 주기적인 자체종합감사를 통해 감사대상 소관 전반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과 잘못된 행위 등을 바로잡아 행정의 효율성 향상
- 또한, 모범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법령 및 규칙의 기준에 부합되고 적극성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유도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2019년도 위원회 자체감사계획 알림” (감사담당관-59, 2019. 1. 11.)

II

감사 개요

- 실시기간 : 2019. 11. 4. ~ 2019. 11. 29.(20일간)
- 감사대상 :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청렴연수원(14개과)
 - 부패방지국 6개과
 -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청탁금지해석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생활적폐 대책 TF, 청탁조사처리팀 포함)
 - 심사보호국 6개과
 -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공익심사TF포함)
 - 청렴연수원 2개과
 -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청렴교육콘텐츠개발 TF포함)

○ 대상업무 : '17. 10월 ~ '19. 9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분야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추진분야
- 위원회 성과평가(업무실적평가) 추진분야
- 예산회계·지출 분야 등

○ 감사반 : 감사담당관(반장) 등 5명

- 감사반장 : 1명
- 감사반원 : 4명

총 평

- 부패방지국 등 감사대상 각 실·국의 최근 2년간(2017. 10월 ~ 2019. 9월)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성·공정성·합리성 등을 감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법령·지침 등을 특별히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아직까지 일부 업무처리 미숙, 회계 지출업무의 부적정 반복 등이 확인되고 있어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담당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특히,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운영과정에서 검사 시점에 사용자 테스트 기간 제공,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도 합격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운영 불합리
 - 일부 공익신고서의 접수시기가 불명하여 처리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접수 관리 개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처리기한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청렴교육 계획 대비 운영이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실화, 성격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소양강사들의 보수교육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가 요구되었음
- 한편, 공공환수법 제정, 공공부문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연예인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 직권조사 등 적극행정 수범 사례도 있었음

1. 정책업무 분야

가 부패방지 종합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개 선 / 개 선)

제 목 부패방지 종합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소관부서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혁신행정담당관

내 용

1. 업무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혁신행정담당관)는 부패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업무시스템인 청렴e-시스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로미시스템’, 국민들의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을 위해 ‘청렴신문고’ 등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을 2003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단계(1단계사업 제안요청서 참조)에 걸쳐 범국가적 부패방지 종합시스템¹⁾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부패방지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에 따라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1단계사업을 (주)○○정보통신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사업기간 : 2018. 6. 4. ~ 2019. 1. 30.)하여 추진하였다.

1)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이라고도 함, 2단계 구축사업 계획 시 사업기간을 2021년 4단계에서 2020년 3단계로 조정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부패방지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운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는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2019. 12. 31.부터 2019. 1. 11.까지 감리법인((주)○○씨에이)으로 하여금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1단계사업에 대한 종료단계감리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2019. 1. 16.자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과업이 행완료의 적합성 여부 점검결과 집계표에는 총 855건 중 적합 789건, 부적합²⁾ 5건, 점검제외³⁾ 61건으로 나타났고, 이후 (주)○○정보통신컨소시엄은 2019. 1. 25.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조치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서를 발송하였으며, 감리법인은 2019. 1. 29. (주)○○정보통신컨소시엄에게 종료단계감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된 내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정보통신컨소시엄은 2019. 1. 30.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자체검사결과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는 2019. 1. 30. 검사계획(검사기간 : 2019. 1. 31.부터 2019. 2. 13.까지)을 수립하여 업무별 담당자 등 48명을 검사팀으로 구성하여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후 검사팀원이 작성한 보통이상으로 제출한 검사확인서를 토대로 2019. 2. 13. 준공 처리한 후 검사공무원은 2019. 2. 19. '검사팀원들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오픈(3월4일)이전에 오류 및 개선사항을 제공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과 '862건의 기능 중 조치예정일이 준공검사 이후의 일정으로 기재된 584건의 미조치 사항 기능개선오류·개선일정표'를 메모보고로 송부하였다.

2) 검사기준서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지 않거나,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와 외부환경 변화, 주관기관이 요청이나 협의에 의해 진행 중인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기간 중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의 추진 등을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혁신행정담당관은 감리결과, 감리조치 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정보화진흥원의 검사확인서, 직원들이 보통이상으로 작성한 검사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준공처리하였으나, 일부 운영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직제 설명자료」(심사보호국, 2019. 4.)에 따르면, 차세대국민신문고는 2020년까지 173여억원의 예산과 민원 등 6개 업무와 연계되어 21명의 인력이 투입되나,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은 2020년까지 143여억원의 예산과 공익신고 등 12개 업무와 연계되어 3.5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회 정보화 업무 혁신방안」(혁신행정담당관, 2019. 6. 3.)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 전담인력은 차세대국민신문고 5명(업무인력 7명 별도),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2명(업무인력 1명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스템 구축 규모에 비해 사업을 이끌어갈 전담인력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3년부터 운영해온 청렴e-시스템, 제로미시스템, 청렴신문고 등 과거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과 매칭시키는 등 자료이관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실무추진단 43명을 구성하였으나, 실무추진단 구성원의 소속부서가 다양하여 근무 장소도 다르며, 구성원의 업무가 기존 주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로서 구축사업을 지원하다보니 참여도가 저조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전담TF 구성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해 보였다.

둘째,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검사 설명회 개최계획(혁신행정담당관-1058, 2019. 1. 31.) 및 붙임파일(검사계획)의 검사세부지침에 따르면, 본사업에 대한 검사 시 개별평가단위를 양호, 보통,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고 종합평가지 보통이상인 경우를 합격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보통에 대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도 합격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의 영향력이 큰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사업종료 이후에도 진행되거나 미조치되는 등 사업이 부실화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는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또는 본사업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한지 또는 세부항목별 과업내용 이행결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또는 점검제외대상인지로 구분하여 평가)의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1] 검사계획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검사기간	2019. 1. 31. 2. 13.(2주간)
검사완료 보고회	2019. 2. 12. 14:00-16:00
검사종료	2019. 2. 13.(합격여부결정)
검사팀 구성	사업관리팀 2명, 사업지원 1명, 의사업무 1명, 업무지원1팀(부패방지국) 7명, 업무지원2팀(심사보호국등) 9명 협업부서 2명, 업무지원3팀(공공기관) 21명 등
평가기준 (검사세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합격기준 : 미흡없이 보통이상) ○ 개별평가단위 :양호, 보통, 미흡 기준 -양호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 보통 : <u>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u> 사업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이 가능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 미흡 : <u>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u> 개선이 불가능하여 사업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셋째로,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팀원 48명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으로서 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여 검사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 검사팀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검사담당자의 역할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참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수십 명의 검사팀원들이 법정 검사기간에 일시에 참여하기보다는 검사기간에 도달하기 이전에 먼저 테스트 기간을 지정하여 검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개선한 후 법정 검사기간에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다.

넷째로, 비록 검사팀원들이 보통이상으로 작성한 검사확인서 등을 근거로 종합평가에서 최종 합격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팀원들은 대부분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사확인을 이행한 것이고,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담당공무원이 최종 확인자 및 시스템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능개선·오류 584건에 대한 사항이 하자인지 기능개선인지, 하자라면 미흡 또는 보통, 양호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분석이 필요해 보였다.

나.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실무추진단구성원 참여 개선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는 2018. 3. 22. 「부패방지 종합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외부 실무추진단을 43명으로 구성하여 부패방지 업무 분석·설계 등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실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 따른 업무 유형별 분석·설계 결과 및 향후 계획 공유,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실무추진단발족,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 실무회의에 실무추진단의 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의 실무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성공의 필수적인 요인이나, 불참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외부기관의 경우에도 21명의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달리 불참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치할 사항

혁신행정담당관 및 심사기획과는 향후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인력구성, 사용자 테스트 기간 부여, 검사 및 평가 방법, 실무추진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부패방지국 및 심사보호국은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주 의)

제 목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사업

소관부서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은 부패 또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호보상정책과 등은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였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추진하였으며, 보호조치 불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 노력을 통해 2017년 보호사건 처리건수가 37건 대비 90건으로 143%가 증가했음에도 보호사건 인용률은 52.4%에서 58.6%로 보호사건 수용률은 57.1%에서 82.1%로 증가하였

으며, 보상금 지급기간을 2017년 대비 289일 단축하고, 역대 최다 보상금(6억 9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462개 기관 중 345개 기관이 공익 신고 책임관을 지정한바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담당관실은 보호보상정책과 등에서 작성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과제 실적자료 중 '보호사건 인용률 및 수용률'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위원회 통계자료집의 통계수치를 상호 비교해 볼 때 일부 상이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3.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은 성과지표와 관련되어 연도별 실적을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상호 비교될 수 있도록 통계 수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다 | 공익신고사건 접수 및 통계관리

(통 보 / 주 의)

제 목 공익신고사건 접수 및 통계관리 철저

소관부서 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민원신고심사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보호보상정책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통계의 사항이 분장사무로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철저

공익신고사건 접수부서(민원신고심사과)는, 2017. 12. 7. 공익신고자 ○○○이 우리 위원회에 피신고자 1인의 공익신고서 1건을 제출하자, 2017. 12. 8. 신청번호 2017-79××로 접수하여 사건처리부서(구, 공익심사정책과)로 배정하였고, 추가로 같은 공익신고자가 2017. 12. 15. 피신고자 10명의 공익신고서 10건을 제출하자, 2017. 12. 18. 피신고자 10명을 전자정보시스템에 기재한 후 신청번호 2017-83××로 접수하여 사건처리부서로 배정하였다.

이후, 사건처리부서에서는 2018. 2. 2. 공익신고사건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20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번호가 2건으로만 접수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신고자별로 각각 신청번호를 달리하여 20건으로 접수하여 달라고 접수부서에 메모로 요청하였고, 접수담당자는 같은 날 20건의 신고서를 신청번호를 달리하여 접수일자를 2017. 12. 15.로 소급하여 20건으로 접수하였으며, 이후 사건처리담당자는 2018. 3. 15. 기관송부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2018. 2. 2.이전까지 전자정보시스템에는 피신고자 11명을 2건의 사건번호로 접수한 사항이외에는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 9명을 추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본 감사 시까지 관련 사건 서류철에도 공익신고자가 언제 피신고자 9명을 추가로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정하건데, 접수담당자가 추가 신고서를 전자정보시스템에 기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처리부서로 배정하였거나, 사건처리담당자가 2018. 2. 2. 이전에 공익신고자로부터 직접 우편으로 받아놓은 후 수 일이 경과한 사건처리시점에 피신고자별로 접수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 처리기일 관리 부실 또는 신고서 접수 여부에 대한 민원 야기 또는 공익신고서의 분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나. 공익신고사건 통계관리 부적정

보호보상정책과는 위원회의 통계자료집의 발간을 위하여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의 분기별로 발간된 통계자료집과 보호보상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익신고 접수·처리와 관련된 통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3.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심사기획과), 정부합동민원센터(민원신고심사과)는 공익신고서의 접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통보)

심사보호국(보호보상정책과)는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건수 등과 관련하여 타부서 등에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상이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주의)

라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처리

(통 보)

제 목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처리 지연
소관부서 심사보호국(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심사보호국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2017. 10.부터 2019. 9.까지 처리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사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미처리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1]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사건 처리 현황

(기간 : 2017. 10. ~ 2019. 9. 단위 : 건)

연도	접수건수	처리기한 준수		처리기한 미준수
		60일 내 처리건수	61~90일 내 처리건수	90일 도과 건수
2017(10~12월)	121	3 (2.5%)	17 (14.0%)	101 (83.5%)
2018	654	128 (19.6%)	154 (23.5%)	372 (56.9%)
2019(1월~9월)	576	133 (23.1%)	214 (37.1%)	229 (39.8%)
합계 (평균)	1,351	264 (19.5%)	385 (28.5%)	702 (52.0%)

※ 조사중 109건 포함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17. 10.부터 2019. 9.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사건 처리 현황 중 단순 종결이 아닌 송부 및 이첩건수가 총 1,351건 중 929건(68.8%)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건의 조사·심의가 단순 종결 대비 장기간 소요될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10월 이후 매년 처리기한 준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로 개선중에 있으나, 여전히 처리기한 미준수 건수가 과반(52.0%)을 차지하는 등 법령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조치할 사항

심사보호국(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사건 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마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운영

(개 선 / 주 의 / 권 고)

제 목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계획 내실화 등

소관부서 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

내 용

1. 업무 개요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에게 청렴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수요를 조사한 후 매년 약 100개 ~ 300개 기관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이중 청렴도 하위기관 중 대규모 인원이 참석 가능한 기관 또는 고위직이 다수인 기관을 우선적으로 교육대상 기관(약 25~35개 기관)으로 선정하여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연수원 기관의 경우에는 협업차원에서 별도로 교육수요를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라크 청렴위원회는 2018. 4. 22.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반부패 역량 및 제도배양 강화를 위해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청렴연수원은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라크 청렴위원회 실무급 지원을 대상으로 2019. 6. 26.(수)부터 2019. 6. 29.(토)까지 청렴연수원에서 반

부패 정책연수를 추진한 후, 2019. 7. 1. 연수생 초청비, 통번역료, 강의료 등으로 약 36백만원을 지출했다는 결과보고를 하였다.

[표1] 이라크 공무원 반부패 정책연수 개요

- 일시 : '19. 6. 26.(수)~29(토)(4일간), 세종·청주
- 대상 : 이라크 청렴위원회(Commission of Integrity) 소속 공무원 12명
- 연수내용 :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 언어 : 한-아랍어 순차통역

또한, 청렴연수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부패방지교육)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수행할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청렴교육 강사들이 원활한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계획 내실화

청렴연수원은 기관대상 청렴교육을 2019년 42회, 2018년 61회, 2017년 67회 실시하였고, 이중 연수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2019년 33회, 2018년 51회, 2017년 53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교육 실제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 1,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수요를 받아 왔지만 교육수요조사 당시 교육신청기관이 포함된 비율은 2019년 66.7%, 2018년 64.7%, 2017년 60.0%로 나타났고, 매년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운영계획상 교육선정기관이 포함된 비율은 2019년 57.6%, 2018년 62.7%, 2017년 40.4%로 나타나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계획에 보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과정 번역업무

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는 2019. 6. 26.부터 6. 29.까지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를 운영하고 2019. 7. 1.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사업을 완료한 지 4개월이 경과한 2019. 10. 28.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 운영계획(2019. 6. 7.)을 근거로 「청렴에 관한 토론 학습」에 대한 한-아랍어 번역료 787천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청렴에 관한 토론 학습」에 대한 강의는 「토론으로 배우는 청렴」과 같이 당초 교육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2019년 6월경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된 지 4개월이 경과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사업목적과는 관련 없는 연수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다거나, 다른 국가 대상 연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번역을 추진하였다면, 기존 사업과는 연속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다. 청렴교육 소양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조에 따르면, ‘청렴교육 기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 내에서만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고, ‘청렴교육 소양강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며,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과 관련된 전문적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소양강사와 전문강사는 외부강의 출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청렴연수원에서는 강사관리를 위해 동 규정 제18조에서 청렴교육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는 명부에 등록된 이후 강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명부 등록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부패방지교육)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위해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렴교육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에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청렴교육 소양강사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청렴연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강사 명부를 확인하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렴연수원에서는 강사들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청렴교육강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강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소양강사의 경우는 전문강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강의 출강을 하고 있고, 해마다 강의를 듣는 교육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된 강사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자체감사 결과 확인하였다.

3. 조치할 사항

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은 기관대상 청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과 실제 운영이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보다 내실화를 기하시기 바라고,(개선) “이라크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연수 운영 계획”과 성격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주의) 외부강의 출강을 하며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렴교육 소양강사들의 관리를 위해 소양강사들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2. 계약 분야

가 인쇄비 집행 관련 부실견적서 징구

(주 의)

제 목 인쇄비 집행 관련 부실견적서 징구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내 용

1. 업무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쇄계약의 대금 집행 시 단가 산출내역이 기재된 상세견적을 징구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규(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한하여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의 인쇄규모 1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에서 집행한 32건 중 총16건의 지출요청서에 단가가 '0'원으로 기재되어 단가 산출내역을 알 수 없는 부실 견적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조치할 사항

위 소관부서는 인쇄비 집행 시 적정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단가 산출내역이 기재된 상세견적서를 징구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예산·회계 분야

가 |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시 정 / 주 의)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소관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해석과, 심사기획과

내 용

1. 업무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 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규(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정규근무시간(0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녁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근무지의 출장으로 인한 식비 지급 등이 확인된 자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근 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의 특근매식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및 출장 식비 지급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총38건, 210,5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조치할 사항

가.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 소관부서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나.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 소관부서는 특근매식비 지급 시,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 및 유연근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하시고, 출장식비가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주 의)**제 목**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소관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청탁금지제도과**내 용****1. 업무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실·국장급 전결(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로 처리하며 주된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있다.

2. 관계법규(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실·국장급 전결(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로 처리하여야 하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 관련 품의서를 실·국장급 전결이 아닌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경우가 총1건 확인되었으며,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총4건 확인되었다.

청렴조사평가과에서는 행사 참석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소명하며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에 명부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조치할 사항

위 소관부서는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국장급 전결로 처리하시고,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미흡

(주 의)

제 목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 미흡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내 용

1. 업무개요

위원회 각 부서에서는 관서운영경비 지급요청서를 증거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고 주무부서는 이를 검토·결의하여 예산을 집행한 후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편철·보관하고 있다.

2. 관계법규(판단기준)

「계산증명규칙」 제31조에서 제33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렴연수원 교육기획과(19.2. 직제폐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의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 및 초과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등)가 상당 기간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렴연수원에서는 초과근무 내역은 전산 상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지급요청서 상 필수 증빙서류라기보다 특근매식비 지급 요청을 위한 보완 서류로 판단하여 엑셀파일로 작성·보관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왔다고 소명하였으나

엑셀 파일 보관은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삭제될 우려가 있으며, e-사람 초과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매식 대상자를 산정한 판단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e-사람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의 출장 여부, 유연근무 여부, 정규근무시간(9시~18시) 전후 출퇴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자료 및 이에 따른 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의 경우, 보관 중인 엑셀 파일 중 2018년 파일은 초과근무 실적시간만 관리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삭제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매식 대상자를 산정하였는지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청렴연수원은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및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 등을 반드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에 첨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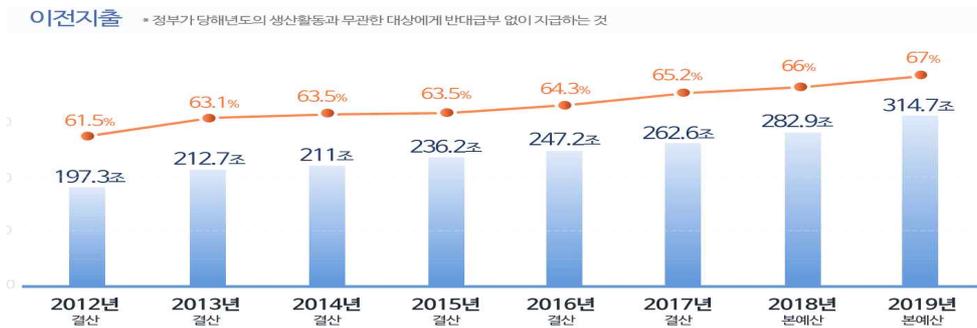
4. 조치할 사항

위 소관부서는 특근매식비 집행 증빙자료로서, e-사람 초과근무 세부내역 및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 명단 등을 반드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청렴총괄과)

□ 추진 배경

-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 추진



- 부정청구시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재정누수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현행법률(1,446개, '18.4월 기준) 전수조사시 환수규정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
: 공공재정 지원 근거 법률 93개, 환수 규정 법률 138개, 제재부가금 유사규정 법률 21개

□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등

< 국가재정 중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추산> (단위: 조)

국가재정 구분	2019년 본예산 기준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중앙재정	469.6	104
지방재정	230.7	86.8
지방교육재정	70.6	23.4
계	770.9	214.2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 부주의·과실에 의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
 - * 개별법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개별법 우선 적용
- (실효성 확보)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행정청의 부정수익자등 대상 출석, 자료제출 등 요구
- (신고자 보호·보상) 신분보장등 조치요구, 신변보호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 주요 성과

- 전체 공공기관(16,492개) 소관 공공재정지급급(약 214조원 추산)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
 - 913개 법률, 6만 5천여개 이상 자치법규에 근거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근거 마련 및 관리 사각지대 제거

□ 향후계획 등

- (제도 완비) 시행령 제정, 신고사무 처리지침 마련 등 법 시행준비(~12월)
- (조직·인력) 법·제도 운영, 각 기관 이행실태 점검 등 법적 의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 (예산 확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관련 '20년 예산(정부)안 3억 편성
- (교육·홍보) 법 시행 전 11월~12월, 홍보영상 송출, 네이버 광고, 홍보 리플릿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활용 전방위적 홍보 추진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 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개최 등 공공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및 교육자료 배포 병행

□ 추진 배경

- 일상의 행복을 해치는 생활적폐청산 차원에서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할 종합대책 수립 필요('18.4.18.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에 따라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 마련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18.8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 잔존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18.8.28. 국무회의) 이행의 일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추진 내용

- (갑질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갑질 개념 정립 및 금지되는 세부 행위 유형 신설('18.12.24.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갑질 개념)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갑질 유형) 대상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구분

- ① 공무원→국민 ② 공무원→공무원 ③ 공공기관→국민
- ④ 상급기관→하급기관 ⑤ 공무원→민원인·하급자·산하기관 직원

※ 인·허가 등 신청에 대한 접수 부당 지연·거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비용·인력 부담 부당 전가 등 금지되는 부당행위 유형 구체화

- (해외출장 부당지원 등 금지) 감독·피감독기관간 해외출장 부당 지원 등 관행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18.12.24.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감독기관) 감독기관(감독·감사·조사·평가 수행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금품등 제공 또는 예우·의전의 요구 금지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피감독기관) 감독기관의 부당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이행 거부 의무화

□ 주요 성과

- 대표적 생활적폐인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위규범을 마련하여 갑질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갑질 공직자 처벌 근거 마련
 - ※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규정 신설로 갑질 행위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
-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 금지 및 피감독기관의 거부 의무화를 통해 불투명한 해외출장 지원 등 부적절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

□ 향후계획 등

- 공공부문 갑질 금지 등 강화된 행위기준의 교육·전파를 통해 공직자 윤리규범 정립 및 공직사회 내 부적절한 관행 해소

□ 추진 배경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외출장, 후원·협찬, 주차편의 제공 등 금품등 제공 관행 개선 필요
 - 피감기관 예산으로 공직자등이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에 대한 국민청원과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장학재단 관련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요구
 - 지자체 출입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 편의 제공 관행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언론 보도 등 조사 필요성 제기

□ 추진 내용

-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18.7.26.)

▪ 점검단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총괄),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대상 기간	청탁금지법 시행('16.9.28.) ~ '18.4.30.(약 19개월)
▪ 대상 기관	총 1,483개 공공기관
▪ 점검 사항	①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출장 ② 공직자가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 국무회의를 통한 각급기관의 확고한 이행 당부('18.8.28.), 실태점검 및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결과 발표('18.12.31.)
- 지역축제, 장학재단 운영 등 지자체 사업 추진 관련 협찬금품을 수수하는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19.7.18.)
 -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수수, 타법(기부금품법 등)상 요건 준수, 이해충돌 여부 심사 강화 등

- 지자체가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기 주차등록 현황, 관련 규정 등 주차 편의 제공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책 마련('19.9.24.)
 -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례·규칙(법령)에 근거하여 요금 감면, 과도한 재량 부여 규정 삭제 등 제도적 보완사항 통보

□ 주요 성과

-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령·기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 및 사업운영 체계를 개선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2.24.시행)으로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의 원칙적 금지,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체계적 대응 가이드라인 반영
 - 관련 예산의 집행 중지 또는 차후 예산 미편성(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등 예산 낭비 방지 및 해외출장 지원 제도·시스템 정비
 -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 보완('18.11월)으로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의 원칙적 금지 명확화,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실시하도록 규정 정비(국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등 각급기관 해외출장 지원의 투명성 제고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 보완 내용>

- (원칙)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 또는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외적 허용)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허용

-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사 협찬금품,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기관 통보
-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과도한 특혜 개선 및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 추진 배경

- 전문가·시민단체·유관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렴도 측정제도 발전방안 모색

□ 추진 내용

- 청렴도 측정 제도 및 모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및 용역수행업체 등 청렴도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 (일시) '18. 2. 21.(수), (장소) 서울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참석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등 토론자 8인 및 반부패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300여명

- 주요 논의 내용을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및 평가모형에 반영

※ (측정범위) 채용비리 적발 기관 등 포함,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측정업무 강화, (측정방식) 설문문항 간소화 및 부패경험 설문 변경, (측정결과) 발표방식 변경 등

□ 주요 성과

- 매년 개최하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업무 담당자 워크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견수렴 대상 범위를 민간 기관, 일반시민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도 제고
- 기존 정책결정의 top-down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현장으로부터의 bottom-up 접근을 통해 청렴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 17개 시·도 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18년 기준) : 약3,700억 원 규모
 - ※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18년 기준) : 약750억 원 규모
-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 재정누수 가능성이 상존
 - ※ 체육진흥 조례 제정 지자체는 광역시·도 14개, 기초자치 107개에 불과
- 체육단체의 임직원 보조금 횡령, 후원금 유용, 채용비리 등 부패문제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약
-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고려할 때, 시도체육회 운영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시급(20.1월 이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개선방안 마련

□ 추진 내용

- 지자체가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시·군·구) 체육회에 경상적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정·현원 변경 등 예산수반 사항의 사전협의 등을 체육진흥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 또한,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 행정재산을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이 사무실 사용하는 경우도 행정 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절차나 조례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규정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보조금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관련 조례에 명문화
- 시도체육회의 지부(지회) 또는 별도 법인 등록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체육단체 운영전반에 대한 지자체의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 공개채용 원칙 등을 규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의 의무적 마련
-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에 후원금 등 수익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 명문화

□ 주요 성과

- 체육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2019.8.13. 연합뉴스, “지자체 보조금 투입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 투명해진다.”

□ 향후계획 등

- 2020. 12월 조치기한에 맞춰 이행점검 등 실시 예정

□ 추진 배경

-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마약을 구매·투약하였다는 의혹과 기획사 대표가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신고
- 언론사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신고한 신고자의 실명을 보도하여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검토

□ 추진 내용

- 실명이 공개된 신고자의 신분공개경위확인 요청이 없었으나 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된 사건은 매우 중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4)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직권조사 실시
- 실명 보도된 수 백 건의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어 보도된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 관련자들의 법 위반 여부와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조사 범위 확정
 - 언론사 기자, 비실명 대리 신고한 대리인, 신고자 본인 등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술청취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판례·법리 검토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알권리, 신고자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부 검토

4)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성과

-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기자, 사적 공간을 방송에 공개한 □□□기자와 양벌규정⁵⁾에 따라 그들이 속한 ○○○○(신문), □□□(방송)을 고발 조치

※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 조치

-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기자 등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

- 신고자보호과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1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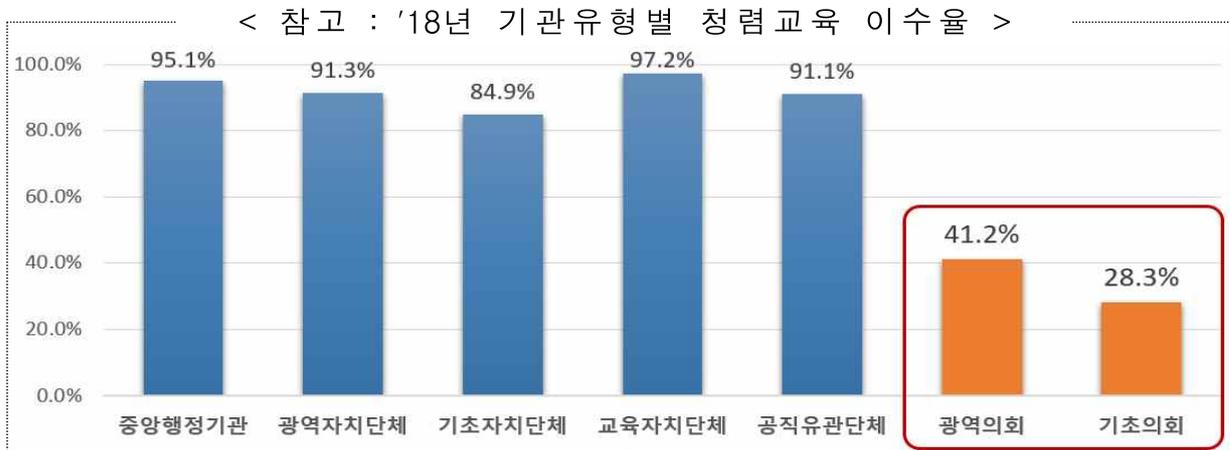
-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19. 8. 6.)하여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공개하는 언론사의 관행에 제동

5) 제30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추진 배경

-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낮음('17년 지방의회 6.11점, 지자체 7.69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청렴교육 실시 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
 - '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결과(청렴총괄과)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무교육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로, 관심도가 극히 저조

* 관련기사 : '외유 단골' 지방의회, 시간 없다며 2시간 청렴교육 안 받아(서울신문, '19.3.5.)



- ▣ 청렴연수원에서는 민선 7기 지방의회 출범('18.7.~)에 발맞춰 지방의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의회상 정립 계기 마련

□ 교육과정 개요

- (과정명)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
- (교육대상) 지방의회 의원(광역 17곳, 기초 226곳)
- (교육인원) 소규모(5명 내외) ~ 대규모(100명 내외)
- (교육시간) 1일 코스(1h~6h) 및 2일 코스(8h) 등 교육 내용·기관 일정에 맞춰 유동적 운영 가능

□ 주요 추진이력 및 성과

- (과정구성) 민간인 신분에서 공직자가 된 지방의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원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

< 참고 : 주요 교육프로그램 및 내용 >

프로그램	시간(h)	세부 내용
국민과의 약속, 청렴서약	0.5	- 청렴서약서 작성·다짐을 통해 청렴의지 강화 표출
청렴역량 측정하기	1	- 청렴역량 평가도구를 통해 청렴 수준 고찰
청렴콘서트	1~2	- 문화공연과 접목한 콘서트 형식의 참여형 강의
지방의원 청렴실천 특강	1.5	-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법령 습득
청탁금지법 토크쇼	2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상황극을 통해 학습

- (홍보) 각급 지방의회 대상 공문·홍보리플릿 제작·배포, 각종 협의회*를 통한 홍보 실시, 참여 독려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등 활용

- (교육실시) '18년에 시범운영(2회)를 거쳐, '19년 10월까지 총 16개 지방의회 총 215명의 지방의원이 연수원을 방문하여 교육 수료

* 교육수료 기관 등 통계 < 붙임 1 > 참조



< 청렴서약 >



< 천안시의회 기념촬영 >

- (교육결과)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92.6점의 높은 만족도 기록

- 교육생 대다수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는 교육”이었다는 긍정적 교육 후기가 다수

V**향후 조치계획**

- 감사대상 수감부서를 포함한 전부서에 감사결과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감사결과 감사원 통보
 -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통보

- 감사결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